

국회운영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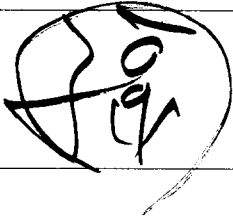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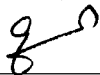

우 150-701 영등포구 여의도동 1 / 전화(02)788-2900 / 전송(02) 788-3351
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허영호 담당자 임준기

문서번호 운영 제 132호

시행일자 1999. 8. 2. ()

수신 의 장

참조

취급		위원장
보존	년	
수석 전문위원		
심의관		
조사관		

제목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

제206회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('99. 8. 2)에서 정치개혁
 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우리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붙임
 과 같이 이를 제안합니다.

붙임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00부. 끝.

국회운영위원장

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

議案 番號	
----------	--

提案年月日：1999. 8.

提案者：國會運營委員長

主 文

- 가.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, 政黨法, 政治資金法 및 國會法等 政治關係法을 審議·改正하기 위하여 國會法 第44條의 規定에 의거 「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」를 구성한다.
- 나. 委員數는 24人으로 하되, 與野同數로 한다.
- 다. 特別委員會의 活動期間은 '99年 10月 20日까지로 한다.

提案理由

先進化된 政治文化를 造成하고, 돈이 적게드는 選舉風土를 정착시키며, 政黨 및 政治資金制度를 효율적으로 改善하는 등 政治構造를 制度化하기 위해 '98年 4月 24日 政治構造改革立法特別委員會가 構成되어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등 政治關係法을 審議해 왔음.

그러나 그 동안 5次에 걸친 特委의 活動期間 延長에도 불구하고 政治關係法이 處理되지 못한 채 지난 7月 16日자로 그 活動期間이 만료됨에 따라 與野合意로 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를 다시 構成하려는 것임.

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書面動議書

受信 國會運營委員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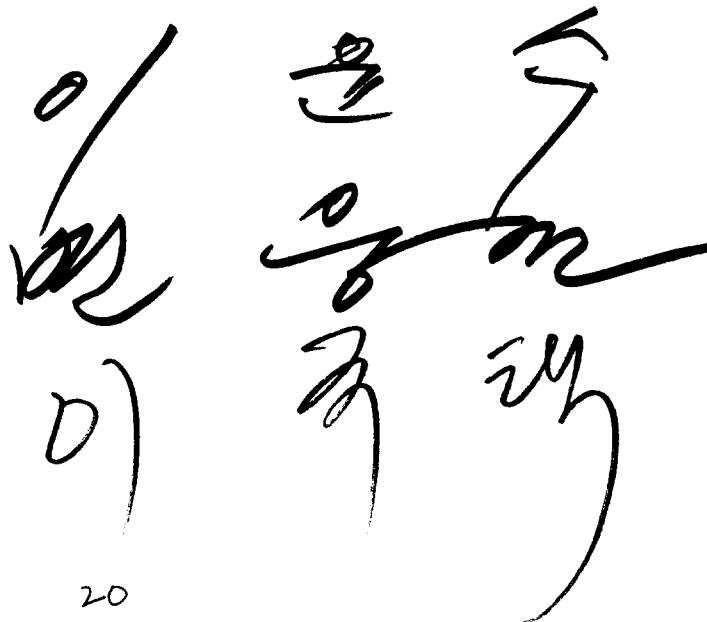
題目 政治構造改革立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書面動議

國會法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
政治構造改革立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國會運營
委員會案으로 提出할 것을 動議합니다.

붙임 政治構造改革立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
1部. 끝.

1999年 7月 22日

動議者



이은경

政治構造改革立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

議案 番號	
----------	--

提案年月日：1999. 8.

提案者：國會運營委員長

主 文

- 가.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, 政黨法, 政治資金法 및 國會法등 政治關係法을 審議·改正하기 위하여 國會法 第44條의 規定에 의거 「政治構造改革立法特別委員會」를 구성한다.
- 나. 委員數는 24人으로 하되, 與野同數로 한다.
- 다. 特別委員會의 活動期間은 '99年 10月 20日까지 한다.

提案理由

先進화된 政治文化를 造成하고, 돈이 적게드는 選舉風土를 정착시키며, 政黨 및 政治資金制度를 효율적으로 改善하는 등 政治構造를 改革하기 위해 '98年 4月 24日 政治構造改革立法特別委員會가 構成되어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등 政治關係法을 審議해 왔음.

그러나 그 동안 5次에 걸친 特委의 活動期間 延長에도 불구하고 政治關係法이 處理되지 못한 채 지난 7月 16日자로 그 活動期間이 만료됨에 따라 與野合意로 同 特委를 다시 構成하려는 것임.